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의안 번호	358
----------	-----

제출일자 : 2007.

제출자 : 달성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3조(노인사회참여의 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47조(비용의 보조)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르신 우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어르신우대업소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다.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나. 입법예고 : 2007. 10. 19. ~ 2007. 11. 7.

○ 해당과(사회복지과) 의견 반영

- 제16조제1항(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기간 신설 (사업개시 1개월 전)
- 제16조제2항 : “삭제” (1항에 포함)

- 제17조제3항(작업단 선정) : 작업단 선정결과 통보시기 변경
(1개월 ⇒ 7일)
- 부칙 제2조(경과규정) 신설 :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경로당일자리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단은 어르신일자리사업 작업단에 선정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3조(노인사회참여의 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47조(비용의 보조)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르신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어르신우대업소”(이하 “우대업소”라 한다)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로우대 실천의지가 있는 달성군 소재 업소로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를 말한다.
4. “작업단”이라 함은 근로능력이 있는 7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작업단체를 말한다.
5. “공동작업장”이라 함은 자치단체, 법인 또는 민간인이 설치한 작업장과 경로당 등, “작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

제2장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 사업비용(공동주택법상 공동주택 제외)
2. 경로당 개·보수 사업
3.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4. 육체적,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호의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어르신 우대 업소 지원

제6조(우대업소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한다.

- ① 이·미용업소
- ② 목욕업소
- ③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대 업소

제8조(요금할인) 우대업소 대표자는 업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할인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우대업소에 대하여 월별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사업신청·선정) ① 우대업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적정수의 우대업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우대업소는 【별지서식】에 의거 매년 읍·면장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기준) 읍·면장은 우대업소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로우대 실천의지가 있는 모범 업소
2. 경로우대요금 및 협약사항 이행 가능 업소
3.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지역성의 고려

제12조(선정취소)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미이행 업소
2. 협약 미이행 업소
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장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

제13조(사업내용) “어르신일자리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사업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어르신일자리사업지원) 군수는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작업단의 구성 및 교육 지원
2. 신규일감 확보 및 제공 지원
3. 각종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4.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13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자 보조금
2. 작업장 설치 및 개·보수 비용
3. 작업장 운영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월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단을 구성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단 선정) ① 군수는 작업단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확보
2. 참여 어르신의 근로 능력
3. 지속적 사업을 위한 일감의 확보

② 작업단 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사업개시 7일 전까지 작업단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단에 대하여는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작업단
2. 불법·부당하게 작업단을 운영시
3. 기타 군수가 작업단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노인 당사자 단체(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위탁이 취소 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타 노인 당사자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을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1조(준용규정) 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경로당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단은 어르신일자리사업 작업단에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2】

어르신우대업소 운영 협약서

달성군 _____읍(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읍(면) _____리
번지 소재 _____업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65세이상 전 노인이
“을”의 업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이용대상) 관내 65세이상 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이 “을”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요금은
기준 요금의 50% 할인한다.

제3조(지정기간) 지정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제4조(해지) “을”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금은 월 _____원 지급한다.

제6조(지원시기)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기준일은 분기 마지막일로부터 10일 이
전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협약취소)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협약을 위반한 때
2. 제2조의 할인요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체결)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효력) 본 협약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유효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갑 : _____ (인)

을 : _____ (인)

【별지 3】

어르신 일자리 사업 신청서

작업단명				
주 소				작업장 연락처
대표자명		주민번호		연락처
작업종류		일감제공 업 체 명		업 체 연락처
참여인원	명 (남: 명, 여: 명)			예 상 월수익 천원
※ 구비서류 : 작업단 명단 1부				

위와 같이 어르신일자리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업장명 :

작업장 대표 :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